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0일,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태선의원)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제21조 및 제3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 개정안 제출 배경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청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스스로 처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간이한 방식의 구제절차로, 쟁송에 대한 부담 없이 국민의 손쉬운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행정청도

효율적으로 자신의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3)]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인 "30일"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4)]

---

1)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법제처, 2024. 11.)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농식품부 소관 개정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정비 관련 개정안 】

개 정 안	내 용	현행(하위법령)	개정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재심사 완료 후 7일	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2개월	지체 없이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10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14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20일	행정기본법 적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시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7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단서 제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10일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3개월	행정기본법 적용

※ 자료: 관련 법률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4) 박훈민,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행정법학, 2024

2. 유기식품등의 인증 관련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안 제20조제5항·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안 제21조제4항·제5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 및 제26조).

【 유기식품등 인증제도 개요 】

□ (목적)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

□ (인증구분 및 표기)

구분	주요 인증기준	인증로고
유기 농산물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안함 ○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등	유 기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농산물	◈ 無 농약,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 사용 ○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 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등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심사) 민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시 생산물에서 **농약잔류 허용기준 1/20을 초과한 경우**나 **재배토양이 농약 잔류기준**(0.01㎎/㎏)을 **초과**한 경우 **인증 부적합 처리**

ㅇ 인증심사 후,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이 인증한 농가 등을 방문하여 생산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여부 조사(전수조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 유기식품등 인증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증 건수	유기	8,102	8,872	9,624	9,546	9,913
	무농약	20,333	18,915	17,371	16,954	16,424
	합계	28,435	27,787	26,995	26,500	26,337
농가	유기	23,750	25,362	24,906	24072	24,287
	무농약	35,499	29,992	25,816	25,448	24,381
	합계	59,249	55,354	50,722	49,520	48,668

【 유기식품등 인증심사에 대한 재심사 요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기	28	122	69	43	39
무농약	73	119	92	81	79
합계	101	241	161	124	118

※ 인증갱신,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재심사 현황을 포함한 내역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0조제5항 및 부령 제15조제1항).

【 심사·재심사 절차도 】

구분	인증 신청 (갱신, 유효기간 연장 포함)		심사		재심사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재심사
신청인 및 처리기관	신청인	⇨	인증기관	⇨	신청인	⇨	인증기관	⇨	인증기관
청구기간 및 처리기간 (시행규칙)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50일 이내 결과 통보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사 신청 7일 이내 (연장 불가)		10일 이내 재심사 결과 통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유기식품등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인증사업자는 인증 유지를 위해 갱신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21조),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4항 및 부령 제18조제1항).

인증기관은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부령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부령 별지 제11호 서식).

【 유기식품등 인증 재심사 관련 규정 】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야 한다. ③ ~ ④ (생 략)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유기식품등 인증심사 결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인증기관의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7일)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등 정비 개정안 】

내 용	현행	개정안
유기식품등의 인증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재심사 실시 : 지체없이(법 제20조제7항) * 재심사 결과 통보 : 10일(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0일	**14일**
유기식품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재심사 실시 : 지체없이(법 제20조제6항) * 재심사 결과 통보 : 10일(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0일	**14일**

※ 자료: 관련 법률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20조제8항 및 제21조제7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되, 제

2항 단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5]

개정안에 따르면,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10일 연장 제외)에 통보해야 할 것이나, 현재 1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실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안 제38조제3항 개정 및 제4항·제5항 신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과 실천농가의 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개요 】

□ **(목적)**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자재선택의 편의 제공
  * 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정의)**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07년)
  *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 75종: 토양개량·작물생육(30), 병해충관리(45)

□ 유기농업자재 관리기관 일원화('17.1.1.)
  ㅇ (기존) 농진청(공시, 사후관리 등 총괄), 농관원(사후관리) → (개선) 농관원(총괄)
  *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

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u>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u>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u>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u>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시제품	1,854	1,935	1,939	1,942	2,01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8조 및 부령 제63조제5항).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에 대한 재심사 요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기농업자재(건)	-	1	2	6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공시사업자는 공시 유지를 위해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39조), 갱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38조제3항, 부령 제63조제5항 및 제66조제2항).

인증기관은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부령 제63조제1항), 3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부령 별지 제33호 서식).

【 유기농업자재 심사·재심사 절차도 】

구분	공시 신청 (갱신 포함)		심사 (서류, 현장, 제품)		재심사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재심사
신청인 및 처리기관	신청인	⇨	공시기관	⇨	신청인	⇨	공시기관	⇨	공시기관
청구기간 및 처리기간 (시행규칙)	인증 갱신은 인증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3개월 이내 결과 통보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사 신청 7일 이내 (연장 불가)		3개월 이내 재심사 결과 통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 유기식품등 인증 재심사 관련 규정 】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그 밖에 공시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정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공시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공시사업자가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한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① 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서류 및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4.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 제1항에 따른 <u>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 ~ ④ (생 략)

개정안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현행 3개월)을 14일로 단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등 정비 개정안 】

내 용	현행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10일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3개월	**14일+10일**

※ 자료: 관련 법률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시기관은 재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심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음[6].

그런데, 최근 실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가장 짧게 소요된 기간이 24일이었고, 가장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는 94일이었음.

【 최근 유기농업자재 재심사 처리 내역 】

구 분	재심사 항목(부적합 사유)	(재심사)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소요기간(일)
1	어독성	2021-02-23	2021-04-22	58
2	급성경구,경피독성	2022-07-20	2022-09-07	49
3	급성경구,경피독성	2022-07-20	2022-09-07	49
4	**급성경피독성**	**2023-01-16**	**2023-04-20**	**94**
5	어독성	2023-03-27	2023-05-25	59
6	안점막자극성, 어독성	2023-03-27	2023-04-20	24
7	어독성	2023-03-27	2023-04-20	24
8	꿀벌영향독성	2023-05-08	2023-06-20	43
9	꿀벌영향독성	2023-08-17	2023-09-21	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6)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10일 연장 가능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u>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u>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u>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u>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된 것은 병해충 관리용 자재의 경우 기제출된 독성시험성적서에 대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평가 및 검토를 거치는데, 이때 전문가들의 자문·검토 등이 필요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임.

따라서, 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최대 24일)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충실한 재심사가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7]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재심사 기간의 수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7)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인 강원대학교, 순천대학교는 유기농어업자재 특성 상 현장심사, 독성시험 검토, 공시위원회 심의 등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행 3개월인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출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 세부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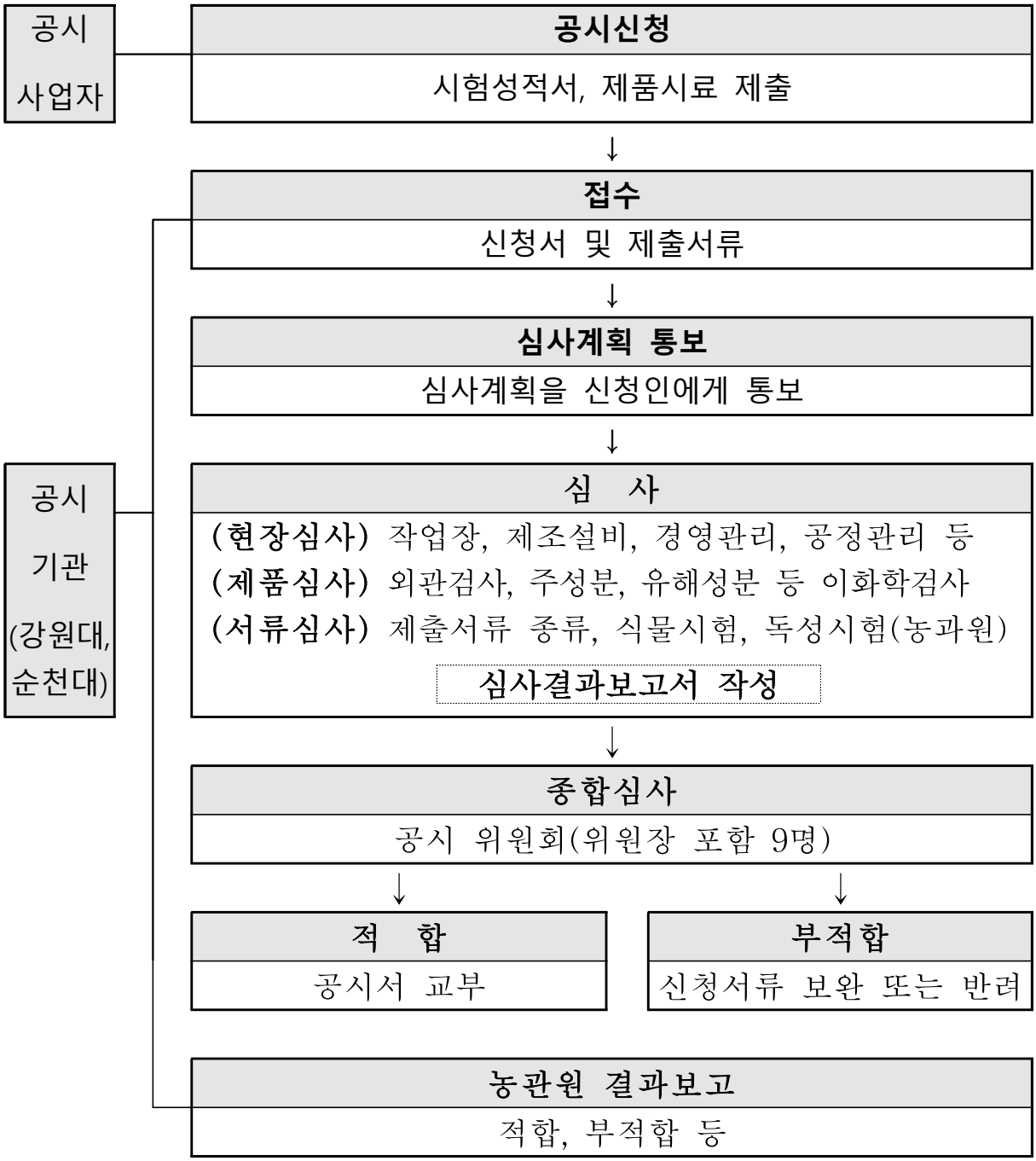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5. 4. 11..)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